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서초역~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]

- 점검일시 : 2018.12.17 (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박수엽,이태형

○ 건설기계 안전(방재시설부)

- 중량물 인양 및 운반시 인양로프가 혹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혹해지장치를 하여야 하므로, 혹해지장치 설치 후 작업하기 바람.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32(굴삭기)



○ 감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시스템비계 설치 작업구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업선은 접지가 단락되어 있으니 접지선 연결 후 사용하기 바람. 가설전선은 반입전 및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기 바람.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1(가설전선)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302조(전기 기계기구의 접지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흙막이 지보공 구조물 상부에 안전대 걸이시설이 미설치 되어 있어 해체 작업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으니 해체 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하기 바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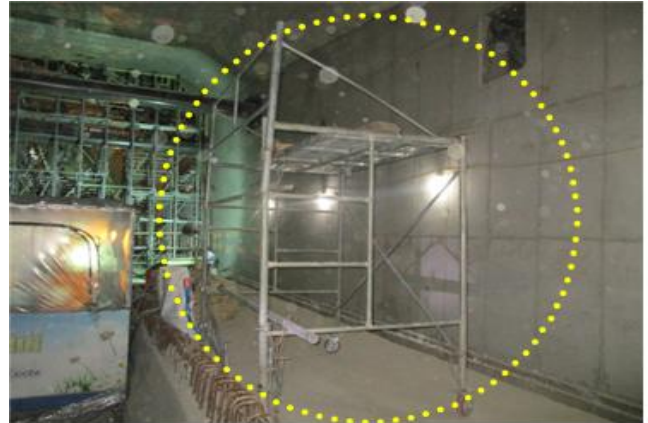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터널내부 면정리 작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비계는 상부안전난간 및 하부 아웃트리거 보완 후 작업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7(이동식 비계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관로 거푸집 작업구간은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작업되고 있어, 임의 승강으로 인한 추락/전도 사고 위험이 있으니 승강설비를 확보 후 작업을 진행하고 사다리 통로 설치 시 규정에 맞게 설치 후 작업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구조)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4(사다리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흙막이 지보공 해체 작업시 사용되는 산소절단기의 LPG게이지가 손상이 되어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체 후 사용 바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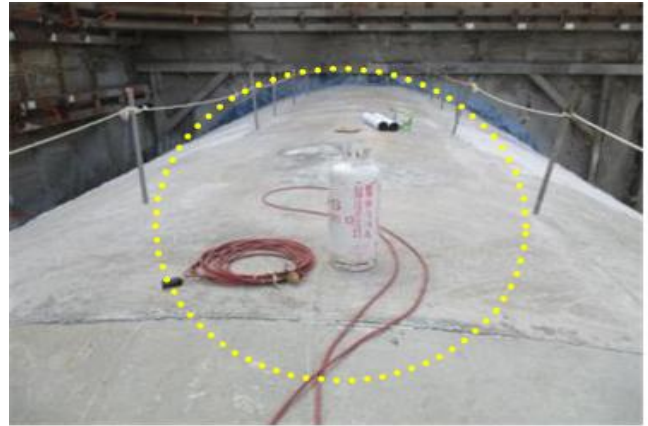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(가스용접 등의 작업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종점 개착터널 상부에 놓여있는 방수작업용 가스통은 전도방지 조치 없이 터널곡면 상부에 놓여있어 낙하로 인한 폭발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고정장치 또는 전도방지 조치 후 작업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3(산소절단기 및 가스용기)



○ 기타 안전관리(방재시설부)

- 현장에 방치된 개인보호구(안전모)는 정리정돈하기 바람, 지급된 보호구를 근로자들이 제대로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상시 점검을 통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교환하는 등 관리철저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43(개인보호구)

